

# 제64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3. 03. 13.(서면심의)

## □ 안 건 명 :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위 안전에 대한 제64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,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「조건부채택」을 의결함

### **【주요 심의내용】**

-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산정에서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.0이상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0.425가 적용됨. 따라서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.0이상을 반영하여 재산출 되어야함.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 발주 시 ‘안전관리비’ 반영
  - 기술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(기술심사담당관-25362호, '22.6.23.)
- 「설계·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」 제6조에 의거 시공 후 단계에 대한 공제료는 제외하여 산출할 것

붙임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

본 검토서는 2023. 3. 6.(월)까지 E-mail(hivhgu@seoul.go.kr)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건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공사특성	적정( O ), 조건부 적정( ), 부적정( ) ○
	공사수행방식	적정( O ), 조건부 적정( ), 부적정( ) ○
	사업여건	적정( ), 조건부 적정( O ), 부적정( ) ○ 민원 발생 조건은 평이함. 보통 수준 수정 필요.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 O ), 조건부 적정( ), 부적정( ) ○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 O ), 조건부 적정( ), 부적정( ) ○
기 타		○ 낙찰자 선정 방식 등에 신규업체 참여 기회 및 지역업체 우대정책 반영을 검토 적용 바랍니다.
종합 심의의견		적정( ), 조건부 적정( O ), 부적정( )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
2023년 3월 3일

심의위원 :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견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공사특성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 ○
	공사수행방식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 ○
	사업여건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 ○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 ○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 ○
기 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.5 과업범위 나. 기 설계 완료한~도서 보완등은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실행 주체를 명기 바람</li> <li>○ 6.1 다.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분기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</li> <li>○ 5.12 시공상세도 승인 -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처에 보고해야한다→제출해야 한다</li> <li>○ 5.18 기술검토 의견서 나. 중요한~첨부되어야 한다는 실행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실행 주체를 명기 바람</li> <li>○ 5.22 가, 법 제28조의 4→건설법 제40조(건설사업관리 중 공사 중지명령 등)</li> <li>○ 5.26의 계약상대자의 용어가 적정한지 검토바람.</li> <li>○ 5.27 마.기타 기록서류에 시공상세도 추가</li> </ul>
종합 심의의견		적정(   ), 조건부 적정( ○ ), 부적정(   )

2023년 3월 6일

심의위원 :

본 검토서는 2023. 3. 6.(월)까지 E-mail(hivhgu@seoul.go.kr)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건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공사특성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  ), 부적정(    )
	공사수행방식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  ), 부적정(    )
	사업여건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  ), 부적정(    )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  ), 부적정(    )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  ), 부적정(    )
기 타		
종합 심의의견	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  ), 부적정(    )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
2023년 3월 6일

심의위원 :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항 목	검 토 의 견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<p>공사특성</p> <p>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 ), 부적정( )</p> <p>○ 건설기술진흥법기준에 따라 도시가로의 교량 및 도로확장 사업으로 보통공사로 적정하게 평가됨</p>
	<p>공사수행방식</p> <p>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 ), 부적정( )</p> <p>○ 기타공사로 적정하게 분류됨.</p>
	<p>사업여건</p> <p>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 ), 부적정( )</p> <p>○ 기존교량과 연결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며, 기존 보도교를 철거하고 진입램프를 설치하는 공사로 총사업비, 사업규모,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평가됨.</p>
사업관리방식 검토	<p>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 ), 부적정( )</p> <p>○ 사업관리방식검토에서 공사의 특성, 사업현장여건, 공사수행 방식과 공사난이도 분석을 통하여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짐.</p>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<p>적정( 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 )</p> <p>○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산정에서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.0이상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0.425가 적용됨(2020.10.06.변경 시행됨)</p> <p>○ 따라서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.0이상을 반영하여 재 산출 되어야함.</p>
기 타	<p>○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공사 감리원 투입계획에서 기존 보도교 철거 및 신설램프설치로 안전분야 감리원(중급)을 추가 배치토록 계획되어있는바,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 1.0 반영 시 추가 안전분야 감리원을 초급으로 반영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</p>
종합의견	<p>적정( 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 )</p> <p>○ 배치인력산출 및 기타사항 반영</p>

2023년 03 월 01 일

심의위원 :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건
가 사 업 적 정 성 평 가	공사특성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
	공사수행방식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
	사업여건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 ○ ), 조건부 적정(   ), 부적정(   ) ○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   ), 조건부 적정( ○ ), 부적정(   ) ○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의 시공단계 안전관리 난이도는 1.0이상으로 적용하기 바람 ○ 안전분야 추가 투입 인원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○ 투입인원수 산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을 보완하기 바람
용역비의 적정성		적정(   ), 조건부 적정( ○ ), 부적정(   ) ○ 용역비 조정 : 2,406백만원 → 2,356백만원(감 50백만원) ○ 공사연장 3km미만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차량운영비 미적용 대상임 ○ 「설계·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」 제6조에 의거 시공후 단계에 대한 공제료는 제외하여 산출할 것 ○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 발주 시 ‘안전관리비’ 반영 - 기술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(기술심사담당관-25362호, '22.6.23.)
기 타		○ 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”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업무 시행 철저 ○ 공사규모, 공사기간,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필요
종합 심의의견		적정(   ), 조건부 적정( ○ ), 부적정(   )

2023년 3월 6일

심의위원 :